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

시설별		직종별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의사 (또는 계약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 무사	사무 원	영양 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직업 훈련 교사	상담 지도원	임상 심리 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안전 관리원	자립 지원 전담 요원
아동 양육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30명 초과시 1명 추가)	필요 인원	필요 인원	1명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1명 (100명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1명
	아동 10명 미만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필요 인원	1명	1명 (3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아동 7명당 1명					1명			
	아동 10명 미만	1명							· 0~2세까지: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아동 5명당 1명								

[illegible]

지역 아동 센터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1명							2명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협동 돌봄 센터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1명							2명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시설 간에는 어느 한 시설의 장이 다른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

가. 법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상담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사업: 상담지도원(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법 제52조제3항제5호의 사업: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이상 및 보육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법 제52조제3항제6호의 사업: 제1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배치·운영하여야 한다.